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44

발의연월일: 2022. 6. 20.

발 의 자: 유의동・강대식・金炳旭

김예지 · 김학용 · 박성민

안병길 • 유경준 • 윤한홍

조명희 · 하영제 · 한기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를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개인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외에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 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 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같다)을"을 "같다) 및 전송을"로 한다.

제26조제7항 중 "제38조까지"를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로 한다.

제28조의7 중 "제39조의3"을 "제37조의2,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정보주체 본인
- 2.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정보가 아닐 것
-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해당 개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
- 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전송, 전송요구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9조의7에"를 "제37조의2에 따른 전송, 제39조의7에"로 한다.

제75조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8까지를 각각 제12호의3부터 제12

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3항 또는 제37조의2제4항"으로 한다.

12의2. 제3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	
런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	3
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	
다. 이하 <u>같다)을</u> 요구할 권	<u>같다) 및 전송을</u>
리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생	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	7
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u>제38조</u>	제 <u>37조</u>
<u>까지</u>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u>까지, 제37조의2, 제38조</u>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u>제39조의3</u> , 제39조의4, 제39조	<u>제37조의2, 제39조의3</u>

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

제37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정보주체 본인
- 2.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 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제4호, 제 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

인정보를기초로별도로생성하거나가공한정보가아닐 것

-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 단 서에 따라 전송 요구를 거절하 거나 전송을 중단한 때에는 정 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지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 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 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 략) <신 설>

12의2. ~ 12의8. (생략)

<u>들 알려야 한다.</u>
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전송,
전송요구의 거절, 통지 등의 방
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7조의2에 따른 전송, 제39조
<u>의7에</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37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u>아니한 자</u>
12의3. ~ 12의9. (현행 제12호
의2부터 제12호의8까지와 같 o)
승)

- 13. (생략)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 략)
- 9. 제35조제3항·제4항, <u>제36조</u>
 <u>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u>
 <u>항</u>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11. (생략)
- ⑤ (생략)

- 1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_____

-----.

- 1. ~ 8. (현행과 같음)
- 9. -----<u>제36조</u> 제2항·제4항, 제37조제3항 또 는 제37조의2제4항-----
- 10. 11.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